

동업계약서

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(이하 "갑", "을"이라 하고, 총칭하여 "당사자"라 한다)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체결한다.

"갑" (대표공동사업자)

성명 _____ (인 / 서명)

생년월일 _____

주소 _____

연락처 _____

"을" (공동사업자)

성명 _____ (인 / 서명)

생년월일 _____

주소 _____

연락처 _____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갑"과 "을"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·의무, 출자, 손익의 분배, 경영상 책임 및 계약의 종료·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의 개요)

1. 사업의 명칭(상호): _____
2. 사업장 소재지: _____
3. 사업의 목적 및 업종: _____
4. 당사자는 본 사업을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며, 대표공동사업자는 "갑"으로 한다.

제 3 조 (출자금액 및 출자지분율)

1. 당사자의 출자금액 및 출자지분율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"갑" 출자금액: 금 _____ 원정 (출자지분율 _____ %)
 - 나. "을" 출자금액: 금 _____ 원정 (출자지분율 _____ %)
2. 납입기한: 20__년 __월 __일
3. 납입계좌: _____ 은행 / 계좌번호 _____ / 예금주 _____
4. 현물(부동산·차량·재고자산·영업권 등)로 출자하는 경우 그 목적물, 평가액 및 평가방법을 [별지 1]에 특정하여 기재하며, 현물출자로 인하여 출자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·부가가치세 등 조세는 해당 출자자가 부담한다.

제 4 조 (손익분배비율)

1. 당사자의 손익분배비율은 "갑" _____ %, "을" _____ %로 한다.
2. 손익분배비율은 제 3 조의 출자지분율과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며, 본 사업의 손익 분배 및 지분 정산의 기준은 본 조의 손익분배비율로 한다.
3. 본 조의 손익분배비율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손익분배비율과 일치시킨다.
4. 당사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, 실질과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면 「소득세법」 제 43 조 제 3 항에 따른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상호 확인한다.

제 5 조 (이익의 분배)

1. 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이익은 제 4 조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(☐ 매월 ☐ 매분기 ☐ 매 사업연도) 분배한다.
2.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가 아닌 이익의 선분배(가지급)로 보며, 매 사업연도 결산 시 확정된 손익에 따라 정산한다.
3.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, 각자의 종합소득세는 각자 부담한다.

제 6 조 (손실의 부담 및 대외 책임)

1. 사업 운영상 발생한 손실 및 부채는 당사자 내부적으로 제 4 조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한다.
2. 다만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제 1 항은 당사자 내부의 부담 비율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.
3. 일방이 제 1 항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, 그 초과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다.
4. 사업의 유지·확장을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비례하여 추가 출자한다.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출자에 응하지 아니하여 타방이 이를 대신 출자한 경우, 출자지분을 및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액의 비율로 조정한다.

제 7 조 (업무의 담당 및 운영)

1. "갑"은 본 사업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업무, 행정 처리 및 일상적인 영업 관리를 총괄한다.
2. 다음 각 호의 사항은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서면(전자문서 및 전자적 메시지를 포함한다)으로 결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.
 - 가. 임직원의 채용 및 해고
 - 나. 1 회 금 _____ 원 이상의 자금 집행
 - 다. 사업장의 이전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·변경·해지
 - 라. 금융기관 차입, 담보 제공 및 보증
 - 마. 사업 종목의 추가·변경 및 신규 사업의 개시
3. 제 2 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를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한다.

제 8 조 (조합재산 및 명의)

1. 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의 합유로 하며,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.
2. 부동산, 차량, 임차보증금, 예금계좌 등 명의를 요하는 재산의 명의자는 [별지 1]에 따르며, 명의자는 해당 재산을 당사자 전원을 위하여 보관·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.

제 9 조 (회계의 투명성 및 장부 열람)

1.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사업 전용 계좌를 통하여 관리한다.
2. "갑"은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, "을"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.
3. "갑"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____ 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"을"에게 교부한다.

제 10 조 (경업 및 겸업의 제한)

당사자는 동업 기간 중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영위하지 아니하며, 경쟁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자문역으로 종사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지분양도 금지 및 담보제공 제한)

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분 및 권리·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12 조 (계약기간)

1.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_ 년으로 한다.
2. 존속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 13 조 (해지 및 탈퇴)

1.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, 파산·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동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타방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 시정이 가능한 위반의 경우 14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한 후 해지한다.
2. 동업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2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3. 탈퇴 또는 해지 시의 지분 정산은 탈퇴·해지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(영업권을 포함한다)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상호 합의하여 금전으로 정산하며, 지분 계산의 기준 비율은 제 4 조의 손익분배비율로 한다.
4. 정산의 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·부채 명세는 탈퇴·해지일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고,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.
5. 구체적인 정산금의 내역과 지급 방법은 별도의 「동업 해지 및 정산 계약서」로 정한다.

제 14 조 (사망 및 상속)

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본 계약상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아니하며, 사망일을 탈퇴일로 보아 제 13 조에 따라 정산한다. 다만 잔존 당사자와 상속인이 합의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세무 관련 협조 및 조세의 부담)

1. 당사자는 사업자등록 및 그 정정신고,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에 상호 협조한다.
2. 본 계약 기간 중의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국세·지방세·4 대보험료 및 그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·추징되는 경우, 당사자는 해당 기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한다. 다만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전액 부담한다.

제 16 조 (비밀유지)

당사자는 동업 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득한 상대방 및 본 사업의 영업상 비밀, 기술 정보, 거래처 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7 조 (분쟁의 해결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18 조 (기타)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조합에 관한 규정 및 상관례에 따르며, 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.

20____년 ____월 ____일

상기 동업계약의 내용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,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"갑"과 "을"이 각 1 통씩 보관한다.

"갑" 성명: _____ (인)

"을" 성명: _____ (인)

※ 첨부 : 1. [별지 1] 현물출자 및 명의재산 목록 (해당 시) 2. 신분증 사본 각 1 부 3. 인감증명서 각 1 부 (권장)

※ 계약서가 2 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사이에 당사자 전원이 간인한다.

동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

※ 본 면(面)은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아닙니다. 실제 계약 시에는 이 면을 제외하고 사용하십시오.

1. 반드시 확인해야 할 4 가지

구분	내용
대외 채무는 연대책임	계약서에 "지분율대로 책임진다"고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. 영리 목적의 동업에서 발생한 채무는 「상법」 제 57 조 제 1 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(대법원 2014 다 26521 판결). 제 6 조는 내부 분담과 구상관계를 정한 것입니다.
출자지분율 ≠ 손익분배비율	「소득세법」 제 43 조 제 2 항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"약정된 손익분배비율"(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)에 따라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두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제 3 조와 제 4 조를 각각 기재하고, 세무서 신고 비율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.
동업자의 "월급"은 급여가 아님	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필요경비 처리되지 않으며, 소득은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. 제 5 조 제 2 항·제 3 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현물출자는 과세 대상	부동산·차량·재고자산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출자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.

2. 특수관계인(가족) 간 동업 시 추가 확인

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한 경우, 「소득세법」 제 43 조 제 3 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(공동사업합산과세). 실제 출자와 경영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출자금 이체 내역, 업무 분장 기록 등)를 보관하십시오.

3. 공란 처리 시 유의

- 제 12 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.
- 제 7 조 제 2 항 나목의 금액 기준을 공란으로 두면 "중요한 의사결정"의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.
- 제 9 조 제 3 항의 결산서 교부 기한을 정해두어야 장부 열람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.

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표준안으로,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세무효과에 따라 반드시 수정·보완이 필요합니다.

본 서식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사용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세주세무회계사무소 | 작성 기준일 : 2026. 8.